

☎0437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-49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691 / 전송(02)792-1296
경영지원국 국장 김태학[6510]/사회공헌팀 팀장 서판숙[6588]/대리 허혜진[6691]/E-mail: hihi719@nate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531-12957호

시행일자 2018. 03. 06

수 신 16개 시도 의사회,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

참 조

제 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『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교재』 관련 협조 요청의 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 제2항 1호에 의거 의료법 제3조의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3. 이에, 노인복지법 제39조5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위해 ‘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교재’ 배포 협조를 요청해온바, 다음과 같이 귀 회의 협조를 요청하오니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협조요청사항: '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교재(붙임2)'의 귀 회 홈페이지 내 게재요청

나. 세부내용: 노인학대 현황,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,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

다. 교재 관련 문의: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혜숙 사회복지사(02-3667-1389)

붙임: 1. 관련공문. 1부.

2. 교육 교재(파일).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